

 알기쉬운
브라질
세무
가이드

알기쉬운
브 라 질
세무 가이드



알기 쉬운 **브라질** 세무 가이드

초판 1쇄 발행 2017년 10월

지은이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발행인 KOTRA

주소 Alameda Santos 700, CONJ 81,82, Ed.Trianon Corporate,
CEP 01418-100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전화 55-11-3175-3030

© KOTRA

머리말

브라질의 세제는 연방, 주, 시 별로 세금의 관할주체가 다르
고, 이에 따라 세금의 산정방식도 달라서 복잡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브라질 전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려면 3,000개
의 세무규정과 55,000개의 세무조항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브라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복잡한 세제 때문에 불필요
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관료주의적
행정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돈 새지 않는 똑똑한 세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이다.

이 책은 무역관 조사팀의 이성훈 과장이 기획하고, 최선욱 과장이 집필했다. 내용은 브라질 회계법인인 윈택의 김산옥 회계사, 딜로이트의 안덕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다. 책 발간에 참가한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017년 10월

상파울루 무역관장 **이영선**

목 차

I.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종류	10
-----------------	----

II. 세목별 세부내용

1. 연방세	14
가. 개인소득세(IRPF)	14
나. 법인소득세(IRPJ)	15
다. 기업이윤세(CSSL)	21
라. 사회기여세/사회보장세(PIS·COFINS)	22
마. 수입관세(II)	24
바. 공산품세(IPI)	25
사. 금융거래세(IOF)	26
2. 주(州)세	27
가. 유통세(ICMS)	27
나. 자동차세(IPVA)	32
다. 상속세(ITCMD)	32
3. 시(市)세	34
가. 서비스세(ISS)	34

나. 가옥·토지세(IPTU)	35
다. 부동산이전세(ITBI)	35
4. 기타	36

Ⅲ. 외국 기업의 납세

1.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기업	40
2. 브라질에 수출하는 기업	41

Ⅳ. 참고사항

1. 과세 체계	44
2. 조세부담률	45
3. 해외송금에 대한 과세	46
4. 세무조사 및 벌금	50
5. 이전가격 제도	52
6.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54
7. 절세 팁	56
8. 현지 세무·회계전문 기관	61

I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종류

〈주요 세금 및 세율〉

관할	세금명		포어명	세율(%)	내용
연방	개인소득세		IRPF (Imposto de Renda Pessoa Fisica)	0~27.5	개인소득에 부과 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소득 한도를 조정함
	법인 세	법인 소득세	IRPJ (Imposto de Renda Pessoa Juridica)	15~25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기업 이윤세	CSSL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9 15(금융기업)	기업의 연간 이윤에 부과 되는 세금
	사회기여세/ 사회보장세		PIS-COFINS (PISPASEP/COFINS)	3.65~9.2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기금, 사회보장기금조성을 위한 세금
	수입관세		II (Imposto de Importação)	0~35	수입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공산품세		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0~300	수입품 및 공장에서 출고된 공산품에 부과되는 세금
	금융거래세		IOF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0.38~7.38	대출, 보험, 외환, 채권 등 신용거래 및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세금

관할	세금명	포어명	세율(%)	내용
주	유통세	ICMS (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 e Serviços)	17~20	상품의 유통에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IPVA (Imposto sobre Propriedade de Veículos Automotores)	1~4	자동차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ITCMD (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	4~5	유산 상속, 기부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
시	서비스세	ISS (Imposto sobre Serviços)	2~5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가옥, 토지세	IPTU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1~3	가옥이나 토지소유자에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이전세	ITBI(Imposto de Transmissão de Bens Imóveis)	3	부동산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

자료원 : 연방세무국 (2017년 10월 기준)

Ⅱ

세목별 세부내용



1. 연방세

가. 개인소득세(IRPF)

개인소득세(IRPF)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소득 한도를 조정하여 공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소득한도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세는 매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연방세무국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다.

〈개인소득세율(2017년)〉

소득 한도	세율(%)
R\$1,903.98까지	면제
R\$1,903.99~R\$2,826.65	7.5
R\$2,826.66~R\$3,751.05	15
R\$3,751.06~R\$4,664.68	22.5
R\$4,664.68 초과	27.5

자료원 : 연방세무국 (Receita Federal)

나. 법인소득세(IRPJ)

법인소득세(IRPJ)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브라질 내에서 사업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과세 대상이다. 자회사, 지점, 대리점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한편, 교육, 자산, 종교, 과학, 문화, 스포츠 재단이나 클럽 등은 법인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의 총소득에서 세금공제액을 제한 것이 ‘과세소득’으로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활동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소득세와 별과금을 제외한 각종 세금, 과학·기술연구비, 감가상각비, 일정조건하의 로열티나 라이선스비, 광고비, 일정한도의 악성부채상각, 주주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자지급 등은 모두 공제비용에 포함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여금 등 일부 비사업경비의 경우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공제비용에는 적절한 증명이 되지 않는 비용 및 개인성 경비가 있다. 개인성 경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공제 대상이나 자녀학비, 주택보조비 등은 경영자 급여로 간주되어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 기본세율은 15%이나, 일정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소득 중 초과액(연 소득 24만헤알 이상 또는 분기 소득 6만헤알 이상)에 대해 10%의 초과소득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의 초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초과소득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소득세율(IRPJ)은 25%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다 기업이윤세(CSLL) 9%를 더한 34%가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 과세방식

법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와 면허세, 등록세 등과 같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브라질의 과세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법인세율은 개인과세율에 비해 낮다. 또한, 기업체들의 기업경영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세감면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세방안으로 기업과세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

브라질은 자진산정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택하고 있어 개인이나 법인 모두 소득세를 자진 산정하여 납부한다. 법인

의 경우는 4월부터 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하는데 신고기간은 법인이 어떠한 소득세산정방식(월별 또는 분기별 납부)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선택하는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나머지 소득세산정방식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모두 매년 연방세무국의 납세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소득세를 산정하고 신고한다.

회계처리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다. 발생주의 상 이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실제 수령되어지거나 지급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획득된 수익과 발생한 비용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산정과 납세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 소득세는 분기별 또는 매월 선납한 후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여 이듬해 4월~6월 사이에 신고해야한다.

①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 방식

- 2007년 연방 세무국이 도입한 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연 매출 R\$ 360만 이하 영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해야 함.

- 연방, 주, 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한장의 고지서에 통합하여 납부하며 별도 납부 때보다 세율도 낮아짐.
- DAS(Documento de Arrecadação do Simples Nacional)라고 불리는 세금 납부 용지를 통해 법인소득세(IRPJ), 기업이윤세(CSLL),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공업세(II), 서비스세(ISS), 유통세(ICMS) 등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 사업 분야에 따라 4.5%~16.93% 사이 통합세율이 부과됨.

② 예상소득(Lucro Presumido) 과세방식

- 기업의 연간 예상 소득을 근거로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L)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함.
- 연매출 7800만 헤알 이하 기업으로 수익 마진이 세금 보다 훨씬 높고, 인건비 및 각종 경비 부담이 적은 기업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임.
- 사업 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정부가 규정해 놓은 수익 마진률이 상이함.
 - * 상업 및 공업 분야: 8%, 서비스업 분야: 32%

〈사업 분야 별 수익 마진률〉

사업 분야	수익 마진률
연료, 천연가스 소매 판매	1.6%
화물 운송	8%
부동산 매매업	
상업 공업	
운송업(화물 운송 제외)	16%
변호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동산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서비스 업 전반	32%

- PIS/COFINS 크레딧 환급이 불가하며 3.65%의 세율을 적용함.
- 수익 마진이 적어도 법정 과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함.

③ 실소득(Lucro Real) 과세방식

- 기업의 연간 실소득을 근거로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기 별 또는 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음.
- 연매출 7800만 헤알 이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 마진율이 낮고, 인건비 등 각종 경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과세 방식임.

- 동 과세방식의 경우, PIS/COFINS 납부 시 9.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점이 있으나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건설업, IT업체 등 일부 업종은 ‘실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해도 PIS/COFINS를 크레디트로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PIS/COFINS 세율은 3.65%임.

과세 방식에 따라 법인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법인소득세 계산 방식〉

EX 1) 과세 산정 방식 실소득 기준		
표준세율	15% (연 소득 R\$ 240,000까지)	
추가세율	10% (연 소득 R\$ 240,000 이상 분에 대해) 15% (금융기관)	
연 실소득(lucro real anual) R\$ 300,000인 일반업체의 경우		
R\$ 240,000 까지 (연간 한도액)	15% 세율 적용	R\$ 36,000
R\$ 300,000 - R\$ 240,000 = R\$ 60.000	15+10=25% 세율 적용	R\$ 15,000
총납부액(연간)		R\$ 51,000

EX 2) 과세 산정 방식 예상 소득 기준

표준세율 15% (분기 소득 R\$ 60,000까지)

추가세율 10% (분기 소득 R\$ 60,000 이상 분에 대해)
15% (금융기관)

분기 매출이 R\$ 500,000인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

R\$ 500,000	32% 세율 적용 * 서비스 분야 업체에 적용되는 수익마진을	R\$160,000 (예상소득)
R\$ 60,000 까지 (분기별 한도액)	15% 세율 적용	R\$ 9,000
R\$ 160,000 - R\$ 60,000 = R\$ 100,000	15+10=25% 세율 적용	R\$ 25,000
총납부액(분기)		R\$ 34,000

다. 기업이윤세(CSLL-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은 순이익에 대한 사회기여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Líquido-CSLL)를 목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과세 산정 기준은 법인소득세(IRPJ)와 동일하다.

법인 소득세와 기업이윤세는 반드시 동일한 과세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즉 법인소득세를 실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기업이윤세도 실소득을 근거로 산정해야하며, 법인소득세가 예상 소득 기준이면 기업이윤세도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한다.

기업이윤세는 법인 소득세(IRPJ)와 함께 법인의 소득에 부과 되는 세금으로 흔히 두 세금을 통칭하여 ‘법인세’로 불린다.

〈기업이윤세〉

과세 방식	산정 기준
영세기업통합세	통합세에 CSLL이 포함되어 있음.
예상소득	세전 순이익의 9% * 금융기관의 경우는 세전 순이익의 15%
실소득	세전 순이익의 9% * 금융기관의 경우는 세전 순이익의 15%

라. 사회기여세·사회보장세(PIS·COFINS)

브라질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기여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기업의 총매출을 포함한 각종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PIS/PASEP가 0.65%~1.65%, COFINS가 3%~7.6%에 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PIS/PASEP와 COFINS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두 세금을 통합해서 PIS/COFINS로 표기하기도 한다.

〈사회기여세·사회보장세〉

구분	주요 내용
PIS	산정기준: 총매출액 적용세율: 0.65% (예상소득 과세 체제) 1.65% (실소득 과세 체제, 환급가능)
COFINS	산정기준: 총매출액 적용세율: 3% (예상소득 과세 체제) 7.60% (실소득 과세 체제, 환급가능)

수입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PIS/COFINS가 부과되는데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PIS는 1.65%, COFINS는 7.6%가 부과된다. 최근 수입품에 부과되는 COFINS 세율은 1%p의 추가세율이 부활되어 8.6%로 상향 조절됐다. 그러나 추가세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실소득 과세방식을 택한 기업의 재무수익에 부과되는 PIS는 0.65%, COFINS 4%이며, 예상소득 과세방식의 경우는 재무수익에 PIS/COFINS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PIS/COFINS Monofasico’에 해당되는 품목(개인위생품, 의약품, 화장품, 향수류,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생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PIS/COFINS 세금을 생산 또는 수입 즉시 선납해야하

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생산 및 판매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생산자나 수입자가 이미 납부 완료했기 때문에, 도매 및 소매판매업체들은 동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PIS/COFINS Monofasico’에 포함되는 품목 정보는 연방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PIS/COFINS Monofasico 품목 조회 :

<http://sped.rfb.gov.br/arquivo/show/1638>

마. 수입관세(II)

수입관세(II-Imposto de Importação)는 브라질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세금으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는데, 2017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7.6%로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제품(평균 15.8%)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관세(남미공동관세) 및 공동관세 예외 품목 리스트, 수입세 감면 품목 리스트 등은 개발통상서비스부(MDIC)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품목별 수입관세를 조회:

<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바. 공산품세(IPI)

공산품세(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는 연방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생산품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0~300%까지 다양하다. 담배나 향수 등 생활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세율이 높고 생필품은 세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으며, 수출품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산품세를 면제하고 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공산품세의 감면이나 인상을 조절을 통해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연방정부가 행정부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개

입 여지가 없으며, 행정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산품세율은 연방 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품목별 공산품세율 조회 :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5-2018/2016/decreto/Anexo/AND8950.pdf

사. 금융거래세(IOF)

금융거래세(IOF –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는 각종 신용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대출, 보험, 외환, 채권 투자 등과 관련된 세금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브라질 사용 시에는 IOF가 면제되나 해외 사용 시에는 6.38%의 IOF가 부과된다. 자동차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 기본 IOF(대출금의 0.38%) 납부 후 대출기간에 따른 세금(일일 0.0041~0.0082%)을 납부해야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의 0.38%, 자동차 보험은 7.38%의 IOF가 부과되며 외환매출입, 해외 송금 및 인출 시에도 0.38~6.38%의 IOF가 부과된다.

2. 주세

가. 유통세(ICMS)

흔히 ‘유통세’로 불리는 상품·서비스유통세(ICMS – 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는 주정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된다. 1965년 제정돼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특구가 징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유통세는 공산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된다. 유통세는 운송이나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과된다.

과세율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해당 주 정부의 과세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일한 주(州) 내에서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

대략 17~20%의 유통세가 부과되며 타 주(州)로 출하되는 제품의 경우, 과세율은 7~12%이다. 수입제품에는 4%가 부과된다.

상파울루 주 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州) 내 이동 시 유통세(ICMS)〉

주(州) 명	약자	세율(%)
아크레(Acre)	AC	17
알라고아스(Alagoas)	AL	18
아마조나스(Amazonas)	AM	18
아마파(Amapá)	AP	18
바이아-Bahia)	BA	18
세아라(Ceará)	CE	18
지스트리투 페데라우(Distrito Federal)	DF	18
에스피리투 산투(Espírito Santo)	ES	17
고이아스(Goiás)	GO	17
마라냐웅(Maranhão)	MA	18
마투 그로수(Mato Grosso)	MT	17
마투 그로수 두 수르(Mato Grosso do Sul)	MS	17
미нас 제라이스(Minas Gerais)	MG	18
파라(Pará)	PA	17
파라이바(Paraíba)	PB	18
파라나(Paraná)	PR	18;

주(州) 명	약자	세율(%)
페르낭부쿠(Pernambuco)	PE	18
피아우이(Piauí)	PI	18
히우 그란데 두 노르테(Rio Grande do Norte)	RN	18
히우 그란데 두 수르(Rio Grande do Sul)	RS	18
히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RJ	20
혼도니아(Rondônia)	RO	17.5
호라이마(Roraima)	RR	17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	SC	17
상파울루(São Paulo)	SP	18
세르지페(Sergipe)	SE	18
토칸칭스(Tocantins)	TO	18

◦ 주(州) 간 유통세

주간 이동 시 부과되는 유통세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7% 또는 12%가 부과된다. 과거 발송인이 100% 부담하던 유통세는 2015년 이후 점차 수령인과 발송인이 나뉘서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수신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수입제품의 경우, 주간 운송 시 부과되는 세금이 4%로 통일되어 있다.

〈주(州) 간 이동 시 유통세(ICMS)〉

O
R
I
G
E
M

	DESTINO																											
	AC	AL	AM	AP	BA	CE	DF	ES	GO	MA	MT	MS	MG	PA	PB	PR	PE	PI	RN	RS	RJ	RO	RR	SC	SP	SE	TO	EX
AC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AL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AM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AP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BA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CE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DF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ES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GO	12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MA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MT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MS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MG	7	7	7	7	7	7	7	7	7	7	7	7	18	7	7	12	7	7	7	12	7	7	12	7	7	12	4	
PA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PB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PR	7	7	7	7	7	7	7	7	7	7	7	7	12	7	7	18	7	7	7	12	7	7	12	7	7	12	4	
PE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4	
PI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12	4	
RN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12	12	12	12	12	12	4	
RS	7	7	7	7	7	7	7	7	7	7	7	7	12	7	7	12	7	7	7	18	12	7	7	12	7	7	4	
RJ	7	7	7	7	7	7	7	7	7	7	7	7	12	7	7	12	7	7	7	12	20	7	7	12	7	7	4	
RO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5	12	12	12	12	12	4	
RR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	12	12	4	
SC	7	7	7	7	7	7	7	7	7	7	7	7	12	7	7	12	7	7	7	12	7	7	17	12	7	7	4	
SP	7	7	7	7	7	7	7	7	7	7	7	7	12	7	7	12	7	7	7	12	7	7	12	18	7	7	4	
SE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12	4	
TO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8	4	
EX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Origem(출발지), Destino(도착지), 일례로 SP주(출발지)에서 → GO주(도착지)로 유통 시 7%의 ICMS 부과

* 표 우측 끝에 있는 'EX'는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주간 유통세로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계없이 4% 부과

○ 유통세 대체 세금(ST)

유통세 대체 세금(ST-Substituição Tributária)은 브라질 정부가 제품생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유통 과정 전

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미리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음료수의 경우,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유통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도매 및 소매업체)들은 유통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브라질 정부는 주로 유통과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유통세 징수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세 대체 세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적용 대상 품목을 변경하고 있다.

현재 ‘유통세 대체세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주류, 생수, 청량음료수, 담배, 시멘트, 연료, 자동차 윤활류, 전기, 공구, 전구, 전구용 리액터, 스타트 전구, 건축자재, 청소용품, 전기용품, 의약품, 수의용 약품, 종이, 플라스틱, 세라믹제품, 유리, 타이어, 식품, 문구류, 향수 및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동물사료,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페인트류, 자동차, 이륜 및 삼륜 차량 등이 있다.

유통세 대체세금은 공산품세, 운송비, 출발지 및 도착자의 세율 등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다가 복잡한 계산방식을 통해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전문 회계업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통세 대체세금이 적용되는 품목은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통세 대체세금 적용 품목

<http://nfe.sefaz.se.gov.br/coda-slider/anexo-i.pdf>

나. 자동차세(IPVA)

흔히 자동차세로 불리는 IPVA(Imposto sobre a Propriedade de Veículos Automotores)는 주정부가 자동차나 오토바이, 비행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징수하는 세금으로 세율 1~4% 사이에서 차종 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는 4%, 전기차나 가스차에는 3%, 버스 및 오토바이에는 2%, 트럭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IPVA는 매년 1~3월 사이에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마지막 숫자에 따라 납세마감일이 정해진다.

다. 상속세(ITCMD)

상속세(ITCMD – 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는 유산 상속이나 기부 등을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중 하나다. 상속세 세율은 4~5% 안팎이며 주(州)마다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ITCMD 세율은 4%이며 2017년 기준 62,675헤알 이하 금액의 상속 시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3. 시세

가. 서비스세(ISS)

서비스세(ISS – Imposto sobre Serviços)는 기업이나 전문직종 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시정부가 부과하는 간접세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비용의 2~5%로 사이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최대 5%까지 부과된다. 기업이 위치한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SS는 해당 시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발생 시 마다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나. 가옥·토지세(IPTU)

가옥·토지세(IPTU –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는 시정부가 도시지역의 토지나 건물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가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 부과된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 주거전용 토지나 건물에는 시가의 1%가 부과되며, 그 밖의 토지나 건물에는 1.5%가 부과된다. IPTU는 매년 연초에 시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 부동산이전세(ITBI)

부동산이전세(ITBI – Imposto de Transmissão de Bens Imóveis)는 토지나 가옥 등 부동산 이전 시에 시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서울은 시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상파울루 시에는 부동산 가격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4. 기타

가. 경제기여세(CIDE)

경제기여세(CIDE-Contribuições de Intervenção no Domínio Econômico)는 해외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기술 이전 등 로열티와 관계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이다. 동 세금은 가솔린 등 연료 판매 및 유통 시에도 부과된다.

나. 고용관련 세금(INSS 및 FGTS)

기업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용 관련 세금으로는 사회복지기여금(INSS)과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이 있다. INSS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분(월급의 11%)을 선납한 후 월급에서 공제하며, 고용주 부담분(월급의 20%)도 별도 납부해야한다. FGTS의 경

우,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브라질 정부는 INSS 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FGTS는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다.

Ⅲ

외국 기업의 납세



1.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기업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경우,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세금 납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산 준비

- 수입세, 공산품세, 사회기여/보장세, 유통세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수입세(원자재나 기계 수입 시)
- 공산품세, 사회기여/보장세, 유통세, 서비스세

회계 결산

- 법인소득세, 기업이윤세, 사회기여/보장세

2. 브라질에 수출하는 기업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된다.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된다.

아래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포함해야한다.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예시〉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8	%
공업세 (IPI)	22	%
유통세 (ICMS)	18	%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100.00	USD
수입관세 (I.I)	18.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8.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	118.00	USD
공업세 (IPI)	22.00	%
공업세 산정가격	25.96	USD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100.00	USD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3.52	USD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100.00	USD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17.48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164.96	USD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100-18)	201.17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36.21	USD
최종가격 (CIF+I.I+IPI+PIS+COFINS+ICMS)	201.17	USD

IV

참고사항



1. 과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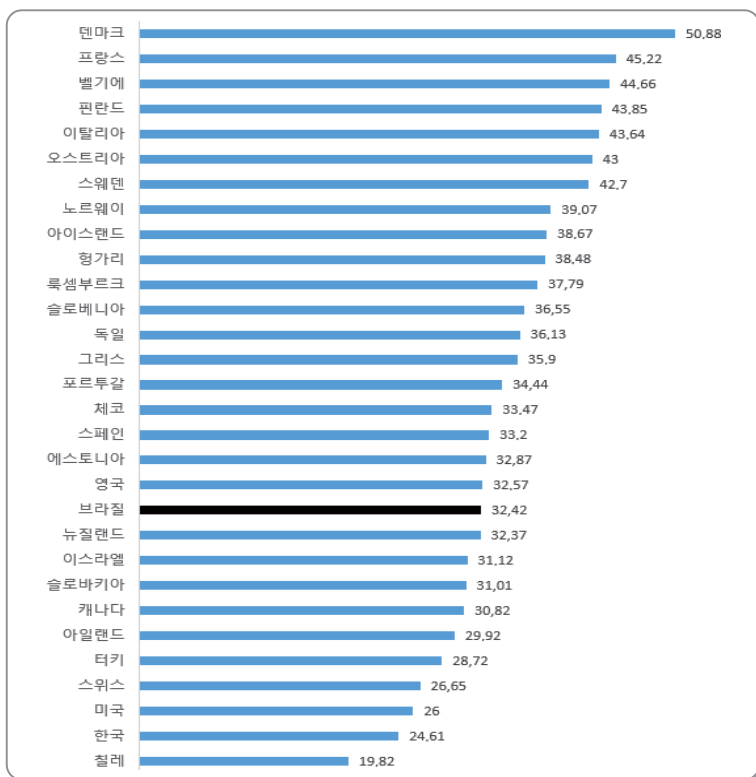
브라질은 1개의 연방특구(브라질리아), 26개 주(州)와 5,57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헌법은 이러한 구성단위에 따라 징세권을 배분해 놓고 있다.

브라질의 과세원천은 소득, 소비, 재산의 3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러한 과세기준의 변형이거나 이를 혼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소비세(유통·판매세), 시정부는 재산세를 과세원천으로 한다.

연방, 연방특구, 주, 시의 수입은 세금(imposto), 수수료(taxa), 기여금(contribuição)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헌법은 "조세는 개인적이고 납세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누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세무당국은 납세자 개개인의 재산, 소득,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조세 부담률

〈OECD 국가와 브라질의 비교 (2014)〉



자료원 : OECD, 단위 : %

3. 해외송금에 대한 과세

○ 해외송금에 대한 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고용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중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납세자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 받게 된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하다. 브라질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송금하는 모든 지급(payment, credit, remittance)은 원천소득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 기업의 이익 배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93년 이전에는 25%였으나 이후 15%로 낮아졌으며, 1996년부터 0%로 면제되었다.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정은 배당소득세율을 15%로 정하고 있으나 브라질법의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브라질법이 적용된다. 브라질법인이 해외주주에게 투자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직접 환거래은행을 통해 배당금을 송금하면 된다.

◦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배당

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한이자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배당과 달리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세가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조세당국이 이자배당을 일종의 금융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투자금의 회수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액수까지는 면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15%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된다. (조세천국 송금의 경우 25% 징수)

◦ 차관에 대한 이자소득

차관에 대한 이자소득은 15% 원천징수하며 조세협정의 세율이 낮으면 그것을 따른다. 이러한 이자 소득세는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한시적 성격으로 건별심사에 따른다.

◦ 로열티와 기술료

2002년부터 해외수익자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기술료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이 15%로 낮아졌다. 또한 10%의 경제기여세(CIDE)가 적용된다. 로열티와 기술료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이전계약 또는 기술원조계약이 특허청(INPI)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BACEN)이 로열티나 기술료의 해외송금의 증명서로 INPI등록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내 양수기업은 로열티와 기술료에 대한 납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공제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기술료의 종류에 따라 순판매액의 1~5%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상표권사용료의 경우 순판매액의 1%범위내로 규정되어 있다.

○ 저작료 및 서비스료

한편, 해외에 지급하는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기술이전계약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15%의 원천소득세를 징수한다. 서비스료에 대해서도 10%의 경제 기여세(CIDE)가 적용된다. 이러한 서비스료에 대한 원천징세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징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4. 세무조사 및 벌금

연방세무기관의 세무신고 조사 범위나 주기에 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정해진 원칙이 없다. 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권한은 세무 신고 연도로부터 5년이다. 세무당국의 납세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사정일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세무행정법원,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세무벌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데 연방세금의 연체벌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일일 0.33%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연방세금의 연체이자자는 기준금리(SELIC) 변동 이율에 1%를 가산한다. 한편, 세무사정을 하여 나타나는 과세금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은 75%나 되며 사기 의도가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1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기준금리 : 8.25%(2017년 10월 기준)

기업이 연방세나 사회기여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주, 파트너, 이사 등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또한, 정부입찰이나 계약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5. 이전가격 제도

브라질의 이전가격 제도는 1996년 발표된 법령 9430호(Lei n^o 9.430/96)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이전가격 제도는 ‘사전에 결정된 고정수익률(pre-fixed profit margin)’ 적용을 요구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국제 규정과 다른 독특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고정수익률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법정 수익률이 실제 시장 사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정 수익률 조정을 위해 브라질 세무당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정절차로 인해 납세자 요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이전가격 제도는 APA(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승인하고 있지 않아 동 제도를 통한 협상 가능성도 없다.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 구제제도가 존재하나 최종 결정까지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구제절차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브라질의 독특한 이전가격세제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과 높은 수익 마진이 발생하는 품목을 선별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한국과 브라질이 2015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등 외국인과 국외 거주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조약이다. 동 협정에 따라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다. 중복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5년이며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가입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양국에서 보험료 낸 기간을 합쳐 최소 연금납부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 연금납부기간은 우리나라 10년, 브라질 15년이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 파견된 브라질 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이중과세 방지조약

브라질과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다.

-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한국 (가나다순)

7. 절세 팁

◦ 적절한 과세산정방식 선택

법인소득세 산정방식은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 예상소득방식, 실소득방식 등 3가지가 있다. 각 방식 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매출 규모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종합진단을 통해 자사에 적절한 과세산정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과세산정방식을 선택했을 경우, 필요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세산정방식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무상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정확한 업종분류 코드 파악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각 업종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종분류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업종분류코드 선택은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 과세 방식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확한 코드 사용을 통해 사회기여세(PIS/COFINS)를 줄일 수 있다. 업종분류코드는 CNAE(Classificação Nacional de Atividades Econômicas)라고 불리며, 연방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품목 별 세제 감면 혜택 검토

브라질은 조세제도가 복잡한 반면, 품목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유통세(ICMS)의 경우, 상파울루 주 내 유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지만 품목의 사양이나 사용목적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기여세(PIS/COFINS)도 감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급하는 품목의 HS Code(NCM)를 분석하여 세제 혜택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정부가 부여하는 세제 감면 혜택 활용

투자 기업의 경우, 브라질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투자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 발전 효과가 있어

브라질 정부는 ISS(서비스세), ICMS(유통세), IPTU(토지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업들은 문화사업진흥법(Lei Rouanet)을 통해 소득세의 일부를 문화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서비스 분야 외국 기업은 브라질 투자가 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해외에서 서비스만 수출하는 경우보다는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후 서비스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연체된 세금은 REFIS 제도를 통해 납부

세금이 연체된 경우, 밀려있는 세금을 연체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는 REFIS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연간 1회 기업들이 밀린 세금을 REFI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금 환급

환급을 받을 수 세금은 ICMS, IPI, PIS/COFINS 등 3가지가 있다. 각각의 세금은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생

산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자재 구입, 전기요금이나 운송비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ICMS

ICMS(유통세)는 과세 산정방식이 ‘예상소득’과 ‘실소득’인 경우에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크레딧은 운송비, 전기요금(수출용 제품인 경우) 납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화물 운송업체의 경우 운송에 필요한 연료 등을 구입할 때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입하거나 제품 반환 시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② IPI

IPI(공산품세)는 과세 산정방식이 ‘예상소득’과 ‘실소득’인 경우에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산품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자재, 생산재, 제품 반환 시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③ PIS-COFINS

PIS·COFINS(사회기여세)는 과세 산정방식이 ‘실소득’인 경우에만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회기여세는 업종에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브라질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다. 제품의 운송 및 보관, 전기세 납부, 반송 시에 크레디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건설업, IT회사 등 일부 업종은 ‘실소득’ 과세 방식을 택해도 PIS/COFINS를 통한 크레디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CNAE)를 통해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에 언급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실소득이나 예상소득 기준 중 하나로 과세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세 산정 방식을 바꾸기 전에 기업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영세기업통합세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과세 산정 방식을 바꿔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현지 세무·회계 전문 기관

□ Wintec Servicos Contabeis SC Ltda.

- 주 소: Rua Domingo Lopes da Silva 890, Vila Suzana, Morumbi, Sao Paulo, SP, Brasil
- 전 화: (55-11) 2597-0630
(55-11) 98532-2926
- 담당자: 김산옥 회계사
- 이메일: wintec21@uol.com.br, sandra.wintec@gmail.com

□ Delloite Touche Tohmatsu

- 주 소: Rua José Guerra, 127 Cep:04719-030 São Paulo SP, Brasil
- 전 화: (55-11) 5186-1000/ 5181-6702
- 담당자: Mr. Renato de Souza
- 홈페이지: www.deloitte.com
- 기 타: 한국인 회계사(안덕수, dahn@deloitte.com)

(참고) KOTRA 상파울루무역관

- 주 소: Al.santos 700, 8F KOTRA, Sao Paulo, SP, Brazil
- 전 화: +55-11-3175-3030
- 이메일: saopaulo@kotra.com.br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saopaulo

ISBN : 979-11-6097-386-0 (93320)
979-11-6097-387-7 (95320)(PDF)